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3-11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8누531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[redacted]

피고, 항소인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
[redacted]

제 1 심 판 결 [redacted]지방법원 2018. 6. 12. 선고 2017구합69251 판결

변 론 종 결 2018. 12. 18.

판 결 선 고 2019. 1. 29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5. 9. 11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,094,547,850원, 지방교육세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3-11

385,656,300원, 농어촌특별세 3,859,9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 "월 차임 8,523,3,000원"을 "월 차임 "8,523,000원"으로 고침

○ 제1심판결문 제10행 아래에서 제7행 "렵다"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

(피고는 위 2011. 9. 7.자 회의록에 원고의 서울 사무소 설치 예정에 관한 기재가 있는 점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인 2011. 10. 13. 이전에 I 사무소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하나, 위 회의록의 기재 내용은 S 측에서 다음 회의를 S의 서울 사무소에서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원고 측의 답변에 불과하고, 실제로는 그 후 2011. 9. 30.자 회의도 평택 본점에서 열렸으므로, 위 회의록 기재 내용을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전에 I 사무소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)

○ 제1심판결문 제10행 아래에서 제4행 "보인다"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

[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이후인 2011. 11. 16.에도 평택 본점으로 화이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3-11

트보드 등의 물품을 배송시킨 바 있고(갑32호증), 2011. 8.~2011. 10.경 [redacted] 본점의 인적 구성원들을 위한 식음료비 등의 지출(갑21호증)도 상당한 수준이었다]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여상훈

판사 견종철

판사 장철익